

제1조 (계약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주야간보호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제2조 (급여범위)

주야간보호급여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3조 (이용자 권리 · 의무)

기관과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다음의 권리와 의무가 발생되며 상대방의 권리를 존중하며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권리

- 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아 인격과 재산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나. 직원이나 다른 이용자로부터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다. 식사, 의복, 주거환경, 여가선용에 있어서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 라. 시설의 운영에 대해 이용자로서의 의견을 표시하고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마. 가족, 친구 등과 자주 만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바. 시설 이용 시 사생활이 존중되고 보호되며 비밀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사. 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 사전에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알권리를 가진다.
- 아.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기관의 의무

- 가.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 나. 급여 제공시간에 이용자에게 일어난 신병이상에 대하여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 다. 이용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야간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보호자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 라. 이용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마.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이용자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 사. 이용자의 식사제공, 이용 상담, 이용편익 제공
- 아. 이용자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 자.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 차.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 카. 수급자, 보호자의 요청 협조

3. 이용자의 의무

- 가.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나. 주야간보호 급여 범위 내 서비스 이용
- 다.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 라.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 마. 기타 시설 규칙 및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이행 의무

4. 보호자의 의무

- 가.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의무
- 다.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 마.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

제4조 (계약해지 요건)

1.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 나. 주야간보호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보호자와 합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가.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 나.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다. 이용자의 건강상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 라.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 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때
 - 마. 이용자가 3개월 이상 이용료를 납부 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 바. 이용자가 기관 내에서 센터 규칙이나 센터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센터 운영 또는 서비스 제공에 지장을 줄 때
 - 사. 이용자의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타 이용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 아. 이용자의 신체 및 정신적 질환의 악화로 인해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 자.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 차. 이용자가 병원입원, 친지방문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1개월 이상 장기간 결석할 경우

제5조 (계약의 해지)

1. 보호자는 제4조 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 만료일 전에 종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할 수 있다.

2. 센터는 제4조 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증빙서류와 함께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6조 (미이용 비용산정)

1. 센터는 월 15일 이상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수급자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 5일의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상 이용 예정 급여비용의 50%를 청구할 수 있다.
2. 제1항의 미이용일에 대한 적용은 평일(월~금요일)기준으로 한다. 다만 월중 급여계약이 체결되어 급여가 개시된 경우 당해 월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미 이용 비용청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급여비용은 재가급여 이용한도금액에 포함된다.

제7조 (이용료 납부)

서비스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이용료를 납부한다.

1.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이용료는 이용자가 제공받은 각 서비스 유형별 총 급여비용의 15%에 해당하는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은, 아래 [별표 1]과 같다.

○ 주야간보호 이용시간별 급여비용(원)

구 분	장기요양 1등급	장기요양 2등급	장기요양 3등급	장기요양 4등급	장기요양 5등급	인지지원 등급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41,820	38,720	35,740	34,120	32,490	32,490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56,060	51,930	47,940	46,300	44,650	44,650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69,730	64,590	59,640	58,010	56,360	56,360
10시간 이상 ~13시간 미만	76,820	71,160	65,750	64,090	62,460	56,360
13시간 이상	82,370	76,310	70,500	68,860	67,240	56,360
비급여항목 및 금액	식사재료비 1끼 3,600원 + 간식비 1회 700원 = 4,300원					
	식사재료비 2끼 7,200원 + 간식비 1회 700원 = 7,900원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등급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676,320

2.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5일에 정산하고 보호자에게 15일 까

지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을 통보한다.

3. 기관은 매월 이용료를 무통장으로 20일까지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국민은행 834701-04-169998 (예금주 : 창동휴재활데이케어센터)

4. 비급여라 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식재료비, 이미용비 등 기타 추가로 발생하는 급여를 말한다.
5. 등급외자의 1일 이용료 40,000원 이다.(급간식비 별도)
6. 급식 및 간식 제공을 제외한 개별서비스 이용에 대한 별도의 비용은 청구하지 않으며, 장기요양보험수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7. 기관은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일수에 따라 산정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를 보호자에게 발송한다.
8. 이용료의 납부는 계약서에 명시한 입금계좌로 입금 또는 현금수납으로 한다.
9. 기관은 보호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제8조 (재계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1. 계약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이 변경된 경우
4. 보호자와 센터가 필요한 경우

제9조 (개인물품)

1. 보호자는 주야간보호시설 이용 시에는 필요한 개인물품은 보호자 구비하여야 한다.
2. 기관은 지정한 물품이외의 개인물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센터와 협의 하여 사용 하여야 한다.

제10조 (시설관리)

1. 기관은 수급자 장기요양급여와 관련된 상담 또는 기타업무처리를 위해 시설을 방문했을 때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간을 마련한다.
2. 기관은 보건, 위생, 방법, 방화 기타시설이용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제11조 (건강관리)

1. 기관은 수급자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이용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

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보호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4. 기관은 주야간보호급여 제공도 중 수급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수급자에게 적절히 조치를 취해야한다.

제12조 (시설물 배상)

1. 이용자는 센터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이용자에 의한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수급자(보호자)는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2.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때에는 기관은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제시하고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위급 시 조치)

1. 기관은 이용자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의료기관, 이용자(보호자)가 지정한 병원 또는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2. 보호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도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센터는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다른 수급자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 (이용자 보호의무)

1.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언어 및 심리적 학대, 성적 학대, 재정적 착취, 방임 등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법률과 지침에 따라 피해학대 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한다.
2. 노인 학대 신고 및 상담 전화 (서울시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제15조 (개인정보 보호의무)

1. 이용자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2. 기관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4. 기관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개인정보제공활용 동의서를 받아야한다.
5. 기관은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6조 (기록 및 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보호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7조 (불편사항에 대한 이용자 의견 제시)

1. 노인이나 가족은 수시로 센터 이용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센터는 제기된 의견이나 요구사항에 대해 접수 후 7일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한다. (전화상담, 홈페이지, 의견함, 가족간담회)
2. 노인이나 가족이 불평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노인에게 차별적 처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 (배상책임)

1.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급자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 가. 장기요양요원(기관)이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를 부상케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나. 장기요양요원(기관)의 학대로 인하여 수급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다.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라. 요양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중 상한 음식을 제공하는 등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기관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 가.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때
 - 나. 기관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 다.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 라. 수급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 마. 이용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 바. 이용자가 센터이용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질병과 합병증에 의해 사망하거나 이에 준하는 상태에 빠졌을 때
 - 사. 센터가 이용자의 치매에 따른 문제행동이 심하여 보호자에게 계약해지를 언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퇴소하지 않고 이용 중에 이러한 문제행동으로 사고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 아. 응급상황 발생 시 적절한 의료적 처치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야 하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에게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 자. 이용자는 고가의 소지품을 가져오지 않도록 하며, 별도의 보관을 맡기지 않는 물건에 대하여 분실하게 되었을 때

제19조 (분쟁해결방법)

본 서비스 급여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갑”과 “을”이 합의에 따라 원만히 처리하며, 만약 당사자 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련법규나 관례에 따른다.